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사용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확정 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법 제19 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 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나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	법 제48조 제1항제1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
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			
다.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2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라.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2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마.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3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바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4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사.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3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아. 사용자가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자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3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차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4호	200만원	500만원	1천만원
카.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4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
타.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2항제5호	100만원	200만원	500만원